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 / 전송 (02) 731-6562
 처리부서 : 법무담당관 (시청본관 3층) / 담당자 : 김현주

문서번호 법무 11010-676
 시행일자 1998. 3. 6. (년)
 (경유)
 수신 내부결재
 참조

| | | | |
|--------|-----|----|---|
| 취급 | | 시 | 장 |
| 보존 | 년 | 73 | |
| 기획관리실장 | 전철 | | |
| 법무담당관 | 주 | | |
| 법제계장 | 김현주 | | |
| 기안 | 김현주 | | |

제목 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집행규정폐지규정 발령 훈령제 878 호

1. 서울특별시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집행규정폐지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 가. 발령예정일 : '98. 3. 10 (화)
-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878호

-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2안)

수신 : 공보담당관
 제목 : 훈령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집행규정폐지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

- 가. 발령예정일 : '98. 3. 10 (화)
-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878호

-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제3안)

수신 : 환경계획과장

제목 : 훈령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집행규정폐지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8. 3. 10 (화)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878호

-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훈령 발령 목록

□1건(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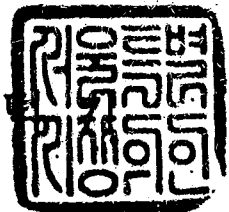
| 연 번 | 법 규 명 | 번 호 | 주 관 부 서 |
|-----|---------------------|-------|---------|
| 1 | 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집행규정(폐지) | 제878호 | 환경계획과 |
| | “ 이 하 여 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집행

규정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8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강



서울특별시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집행규정폐지규정안

| | | |
|------------|------------|------------|
| 제1998.7.24 | 제1998.7.24 | 제1998.7.24 |
| 제1998.7.24 | 제1998.7.24 | 제1998.7.24 |
| 제1998.7.24 | 제1998.7.24 | 제1998.7.24 |

1. 폐지사유 및 주요내용

우리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집행용도를 규정한 「서울특별시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집행규정」은 상위규정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환경부훈령 제364호 '97.9.3) 제34조제2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바, 상위규정으로 단일화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함.

제1998.7.24
제1998.7.24
제1998.7.24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1조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제34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집행규정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집행규정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부시장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음식물쓰레기 50% 줄입니다 ·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3707-9517·8 / 전송 3707-9529
 처리부서 : 환경관리실 환경계획과(서소문별관 제1동 7층) 담당 이정수

문서번호 환계 67100-109

시행일자 1998. 2. 25.

수신 법무담당관

| | | | | |
|-----|---------|-------------|----|--------|
| 선결 | 법무담당관 3 | | 지시 | |
| 접수 | 일자 | 1998. 2. 26 | 결재 | 법제계장 |
| | 시간 | | | 법제심사계장 |
| 처리과 | 번호 | 141 | 공람 | |
| | 담당자 | | | |

제목 「서울특별시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집행규정」 폐지발령 의뢰

1. 법무11030-215('98.1.22)호와 관련입니다.
2. 「'98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및 자치구에 교부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집행용도를 규정한 「서울특별시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집행규정」을 폐지하고자 발령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폐지방침서 (환계67100-108('98.2.24)) 사본 1부. 끝.

환경 계획 과 장

환경계획과장 이 정 수

· 음식물쓰레기 50% 줄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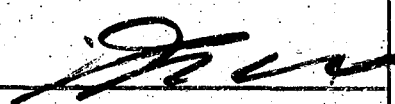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3707-9517~8 / 전송 3707-9529
처리부서 환경관리실 환경계획과(서소문별관 제1동7층) 계장 구아미 담당 이정수

문서번호 환계 67100- 108

시행일자 1998. 2. 24

수신 내부결재

| | | | |
|--------|-----------|--|---|
| 취급 | | 시 | 장 |
| 보존 | | 년 | |
| 행정1부시장 | 전진 |  법무담당관 직사피 | |
| 환경관리실장 | 김민 | | |
| 환경기획관 | 김민 | | |
| 환경계획과장 | 김민 | | |
| 기안 | 환경보호계장 김민 | | |




0033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집행규정 폐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및 자치구에 교부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집행용도를 규정한 「서울특별시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집행규정」은 상위규정인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환경부훈령 제364호 '97.9.3) 제34조 제2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바, 상위규정으로 단일화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집행규정」 폐지 규정안 1부. 끝.

원본대조필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9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를 말한다.
2. "납부장소"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은행 또는 우체국을 말한다. 이 경우 은행은 농협, 축협 및 수협을 포함한다.
3. "체납자"라 함은 납부의무자로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부담금,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징수의 순위) 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부담금

제32조(수납된 부담금의 특별회계 납입) ① 징수권자는 금고은행으로 하여금 징수한 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특별회계에 납입하게 하여야 하며, 금고은행은 납입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납부일 익일까지 징수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고은행으로부터 부담금 납입통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특별회계세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수권자는 부담금의 수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의 특별회계 납입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자는 부담금과 구분하여야 한다.

제33조(환급금의 지출방법) ① 징수권자가 부담금의 과다 납입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처리시 해당 금고은행에 납입된 부담금이 과오납결정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징수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특별회계세입징수관이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34조(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정부장관은 부담금이 특별회계로 납입된 때에는 매분기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정산하여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지급된 징수비용은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여비, 일용직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등
2. 행정소송 비용
3. 신규부과대상 발굴자 및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4.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
5. 기타 시도의 부담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 경비(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의 10% 이내로 한다)

부시장

③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용도에 대한 징수비용의 구체적인 집행방법 등은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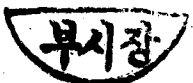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집행규정 (1994. 9. 5 훈령 제80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환경처훈령 제222호 93. 1. 15.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징수비용의 집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환경개선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아울러 기관간 업무처리의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8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환경과)와 자치구(환경과)의 부담금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징수비용의 집행용도) 당해기관에 교부된 징수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비 : 부담금 업무처리에 필요한 여비(국내여비규정에 준한다)
2. 일용직 인건비 : 1명 이내(300일 미만의 일시 고용인부)
3. 일반수용비, 수수료
 - 가. 부담금고지서·장표 등 인쇄비
 - 나. 전산용지 소요대금
 - 다. 전산소모품 대금
 - 라. 부담금 부과·징수 안내문
 - 마. 전산단말기 운영경비
 - 바. 기타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련한 인쇄, 사무용품 구입비 또는 수수료
4. 자산취득비
 - 가. 전산프린터기 구입
 - 나. 컴퓨터 구입
5. 물품구입비 :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6. 행정소송비용 :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련된 행정소송 비용
7.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 가. 포상금총액 지급한도 :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총액은 교부된 징수비용의 1% 상당액 이내로 한다.



(추 2)

나.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준한다.

8.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

가. 활동비

- 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회의비, 행사비 등 업무추진비
- 통사무소에 부담금 고지서 송달을 의뢰했을 경우 그 비용

나. 정보비

- 부담금 업무처리와 관련한 포괄적 성격의 특수사업 수행활동비

9. 기타 부담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 경비

제 4 조(징수비용의 집행 한도액 설정) 기관별 징수비용의 집행한도액은 당해기관에 교부된 징수비용의 10% 이내로 한다.

제 5 조(부담금 업무와 관련된 자의 범위)

부담금 업무와 관련된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환경과장
2.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
3. 상시 부담금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및 그 보조자
4. 별도 계획에 의하여 일시 부담금 업무를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자

제 6 조(예산편성) 각 기관에서는 당해년도 분 예산편성시 전년도 부담금징수실적을 감안하여 기관실정에 맞게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